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2. 4 선고 2024가단2045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6.

판 결 선 고 2024. 12. 4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과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김태현

별지